

.급급 주요 개정 내용 및 유의자항 안내

□ 외부감사인 선임기한 단축 (법10조 ①, ② - 18.11.1 이후 개시 사업연도)

: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로 일률적이었던 감사인 선임기한이

회사의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간으로 단축*

* 감사보고서 제출시기 이전에 감사인을 선임토록 함으로써 감사인의 독립성 제고 목적

구 분	감사인 선임기한	기한 예시 (12월 결산법인 가정)
상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	사업연도 개시일 이전	'18.12.31
상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회사(*1)	사다한도 계시될 이번	10.12.51
외부감사대상 첫해인 회사	사업연도 개시일부터	'19. 4.30
지구심시대경 첫에진 회시	4개월 이내	19. 4.50
이 이 치나	사업연도 개시일부터	(10, 2.14
이 외 회사	45일 이내	19. 2.14

(*1)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회사

- ① (상법)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
- ② (금융사지배구조법) 다음 회사를 제외한 금융회사

·최근 사업연도말 자산 5조원(상장사는 2조원)미만 보험회사·여신전문금융회사·종합금융회사금 융투자업자(*), 자산7천억원 미란 상호저축은행

(*)집합투자재산·투자일임자산·신탁재산의 합계액이 20조원 미만인 경우에 한함

<유의사항>

- ① 감사위원회 의무 설치대상이 아닌 회사가 감사위원회를 임의로 설치한 경우, 선임기한은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이 아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이내임. 단, 이 경우 감사인선임은 감사위원회에서 선정
- ② 10월 결산법인부터 단축된 선임기한 내에 감사인 선임절차를 마무리해야 함. 선임기한 미준수 시 감사인 지정 조치 대상이므로 사전 준비 필요

□ 외부감사인 선임절차 변경 (법 10조 ④-18.11.1 이후 개시 사업연도)

(1) 감사인 선임권자 변경 (회사 →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)

구분	감사인 선임권자
주권상장법인, 대형비상	①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: 감사위원회가 선정
장주식회사(*1), 금융회	② 그 외 : <u>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</u> 을 받아 감사가 선정
사(*2)	※ 직전 감사인을 재선정하는 경우에도 예외 없음
이 외 회사	① 감사가 선정
	② 직전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재선임하는 경우 : 그 감사인으로 선임
	(증선위 선임보고 불필요-법 12조②3호)
	③ 감사가 없는 유한회사 : 회사가 선정(단, 자본급 10억원 이상의 유
	한회사는 사원총회 승인 필요-영13조①)

^{*1}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

▶ 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(영 12조①)

감사인선임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<u>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</u>함. 다만, 해당되는 인원이 7명에 미달할 경우 회사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<u>경영·회계·법률</u> 또는 외부감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 가능

- ① 감사 1명
- ② 다른 법령에 따라 선임한 사외이사가 있는 경우 그 사외이사 중 2명 이내
- ③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() 의결권 있는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기관투자자의 임직원 1인
 - · 지배주주(특수관계자 포함) 인 기관투자자는 제외
- ④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(*) 의결권 있는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주주 2인
 - · 지배주주(특수관계자 포함) 및 임원인 주주는 제외
 - · ③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는 제외
- ⑤ 감사인선임위원회 개최통보일 전날 기준 채권액이 가장 많은 2개 금융회사의 임원 각 1명
 - ㆍ지배주주(특수관계자 포함) 인 금융회사는 제외
- (*) 직전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연도 개시 후 감사인선임위원회 개최 통보일의 전날까지 소유주식수가 현저히 감소한 주주는 제외

^{*2} 금융회사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, 농협은행

<유의사항>

- ① 대형비상장주식회사의 자산 1천억원 이상 조건은 연결재무제표가 아닌 (별도)재무제표 기준임
- ② 2019년 감사계약부터 대형비상장주식회사, 금융회사 중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회사의 경우에는 감사계약 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므로 구성을 위한 사전 준비 필요. 특히, 감사계약 체결기간이 단축된 첫해이고 채권금융회사와 기관투자자의 중복이 예상됨에 따라 일정 사전 협의가 필요
- ③ 개정전 비상장회사의 경우 동일한 감사인을 재선임하는 경우에는 편의를 고려하여 감사인 선임절차 및 선임보고가 요구되지 않았으나 개정 외감법에 의해서는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및 금융회사의 경우 전기 동일감사인을 재선임하는 경우에도 예외없이 감사인 선임절차 및 선임 보고 의무를 준수하도록 강화되었으므로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

(2) 3개 사업연도 동일 감사인 선임 대상 확대(법 10조 ③-18.11.1 이후 개시 사업연도)

주권상장법인뿐만 아니라 <u>대형비상장주식회사</u> 및 금융회사도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

<유의사항>

대형비상장주식회사 중 2년이상의 기간에 대해 임의로 감사계약을 기 체결한 경우, 외감법상 인정되지 않으므로 잔존 계약기간이 남았음에도 개정 외감법을 준수하여 2019년에 3년기간에 대한 감사인을 새로 선임해야 함.

<참고사항>

대형비상장주식회사 중 추기적지청제 해당회사(지배주주가 대표이사인 경우)는 2019년도에 3년 계약하게 되며 이 경우 동 감사계약 종료연도(2021년)까지는 주기적지정 유예됨.

(3) 감사인 자격 요건 강화(법 9조, 9조의2)

주권상장법인뿐만 아니라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및 금융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도 "회계법인" 만 수행하도록 자격 요건 강화(18.11.1 이후 개시 사업연도)

특히, "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"를 신설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회계법인만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감사가 수행 가능하도록 하였음(19.11.1 이후 개시 사업연도)

<유의사항>

주권상장법인이 계약체결한 감사인이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잔존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도 2020년에 대한 감사인을 새로 선임해야 함

(4) 감사인 선임관련 준수사항의 문서화 및 사후확인(법 10조 ⑤, ⑥, 영13조 ③~⑤-18.11.1 이후 개시 사업연도)

구분	내용	
	① 감사(감사위원회)는 감사인의 감사보수, 감사시간, 감사 필요인력에 관	
	한 사항을 문서화	
감사인 선정기준과	② 감사인 선정 관련 기준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 되어야함	
절차의 문서화	- 감사시간, 감사인력, 감사보수, 감사계획의 적정성	
	- 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	
	- 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 내용 및 전기 감사 사후평가 내용 등	
	③ 감사위원회 미설치 주권상장법인, 대형비상장주식회사, 금융회사의 감	
	사는 상기 사항에 대해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 필요	
	감사위원회, 감사인선임위원회 및 사원총회는 감사인 선정을	
감사인 선정을 위한	<u>위한 대면회의를 개최</u> 하고 아래 사항을 문서화	
대면회의 개최	① 감사인 선정 기준에 대한 검토결과	
(필수)	② 대면회의 개최횟수, 참석자 인적사항, 주요 발언내용	
	① 감사(감사위원회)는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감사인 선정 관련 기	
이행여부 사후 확인	준의 이행 여부를 매년 확인	
	② 감사위원회 미설치 주권상장법인, 대형비상장주식회사, 금융회사의 감	
	사는 이행여부를 확인한 문서를 감사인선임위원회에 제출	

<유의사항>

18.11.1 이후 선임하는 감사인부터 적용대상이므로 17~18사업연도에 3년계약을 체결하여 잔여 감사계약기간이 남이있는 주권상장법인은 문서화 적용대상이 아님

□ 직권 지정대상 확대

(1) 지정대상 확대(법 11조 ①, 영 14조 - 18.11.1부터)

공정한 감사의 필요성이 높은 재무상태 악화 및 최대주주·대표이사의 변경이 잦은 상장사 등을 직권지정대상으로 추가

구 분	주요 직권지정 사유
유지	①상장예정법인 ②감사인 미선임③감리결과 조치 ④상호저축은행법상 지정요청
	⑤재무기준(부채비율 과다) ⑥관리종목 ⑦횡령·배임 발생 등
폐지	①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미비
신설	①감사인이 재무제표를 대리작성하거나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을 요구하거나 받은 회사,
	②기관투자자인 주주의 지지요청, ③감사시간이 표준감사시간에 현정히 미달한 회사, ④지
	정기초자료 미제출
	⑤재무기준(3년 연속으로 영업손실, 부(負)의 영업현금흐름, 이자보상배율 1미만), ⑥과거
	3년간 최대주주(2회)·대표이사(3회) 변경, ⑦투자주의 환기종목 등

*볼드체는 주권상장법인에만 적용되는 지정사유(단(투자주의환기종목은 코스닥상장법인만 해당)

<유의사항>

- ① 지정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재무기준은 연결재무제표가 있는 경우 연결재무정보 기준임(영 14조 ① 호, 규정 12조 ③)
- ② 상장예정법인이 해당사업연도 중에 상장되지 못하여 그 이후 사업연도에 기존 지정감사인과 계속감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동 감사인을 증선위가 지정한 것으로 간주하던 규정이 폐지됨. 따라서 상장예정법인이 다음 사업연도에도 지정감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감사인 지정요청을 다시 해야함
- ③ 대표이사 변경은 1인 대표가 수인 대표로 되는 경우, 수인 대표가 1인 대표로 되는 경우, 수인 대표 중 1인이 변경된 경우를 모두 포함함(규정 시행세칙 별지 19호 서식)
- ④ 감사시간이 표준감사시간에 현저히 미달할 경우 직권지정 대상이 되며, 국세청에 통보되어 세 무조사 대상 산정근거로도 활용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 필요.
- ⑤ 지정대상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한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된 법인이 추가되었음. 다만,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·감사 의견변형 등으로 인해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된 경우는 감사인 지정대상에서 제외함(영 14조 ③ 2호)

(2) 지정대상 판단 기준일

- ① 재무기준(3년 연속으로 영업손실, 부(負)의 영업현금흐름, 이자보상배율 1미만) 사유
- : 직전사업연도를 포함한 이전 3개 사업연도(규정 12조②)
- ② 과거 3년간 최대주주(2회)·대표이사(3회) 변경 사유 : 지정대상선정일로부터 과거 3년간(규정 12조 ®)
- ③ 관리종목 · 투자주의 환기종목 사유 : 지정대상선정일 현재(규정 시행세칙 12조 ①)

<유의사항>

- ① 재무기준 선정을 위한 3개사업연도는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사업연도를 의미함 (즉, 개정 외감법 시행일 이전 재무정보가 포함됨) (사례) '20년에 대한 지정 대상을 19.9.1에 판단하되, '16~'18년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판단함
- ② 과거 3년간 최대주주 변경 2회 또는 대표이사 변경 3회 판단 시 과거 3년은 지정대상선정일 (사업연도가 시작된 후 9개월째되는 달의 초일) 로부터 기산함. 최근 3개 회계기간이 아님에 유의

Les Etals

□ 감리 제도 변경 및 감독/재제 강화

(1)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(법 26조 ①, 규정 23조, 19.4.1 이후 감리부터 적용)

- ① 최근 공시자료 등을 중심으로 회사의 재무제표 오류가 있는지 심사
- ② 심사결과 특이사항 발견시 회사의 소명을 듣고
 - 회사의 소명이 타당한 경우 종결
 - 심사결과 과실이고,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공시를 권고하여 회사가 수정을 하면 종결(경 고조치)
- ③ 재무제표 심사 결과 다음의 경우 감리 실시(규정 23조 ① 2호)
- 심사결과 고의 · ○중과실에 의한 위반혐의가 발견된 경우
- 과거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경고를 2회 이상 받은 상태에서 회계처리 위반 혐의 발견
- 감리집행기관의 수정요구를 회사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
- ④ 매년 6월에 다음 연도에 중점 심사할 업종 및 계정 등을 공표(규정 24조 ①)

(2) 감리 절차 변경(규정 24조 ④, ⑤, 30조 ⑤, 19.4.1 이후 감리부터 적용)

- ① 조사과정에 대리인(변호사,임직원) 참여 가능(조사과정을 녹음, 기록하는 경우 대리인 퇴거)
- ② 조치대상자 및 감리업무 수행기관의 안건담당 임직원은 감리위원회 위원과 개별 접촉 금지

(3) 외부 감사법에 회사 및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 제도 도입(법 35조 ①,②,③, 18.11.1 이후 작성 된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부터 적용)

①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계처리기준 위반한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작성시 과징금

회사	회사 임직원 및 감사(위원)	감사인
위반금액 20% 이내	회사 과징금 10% 이내	감사보수 5배 이내

② 금융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8년까지 부과 가능(감리 개시 경우 시효 진행중단)

(4) 회계부정 관련 재제 강화(법 29조①, 39조 ①,②, 48조, 18.11.1 이후 위반행위부터 적용)

- ① 회사 임원에 대한 6개월 이내 직무정지 조치 신설
- ② 회사 및 감사인 회계부정 관련 징역 및 벌금의 상향(가중) 및 병과
- 징역 7년이하 -> 10년 이하
- 벌금 7천만원 -> 이득 또는 회피 손실의 2배~5배(징역과 병과)
- 가중처벌 : 손익 또는 자기자본 분식 금액이 자산의 5%(최소500억원) 이상인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, 10%(최소 천억원)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

□ 주요 개정사항별 시행시기

개정 외부감사법의 시행일은 18.11.1이며 일부 조항은 별도의 시행일을 정하고 있음. 주요 개정사 항별 시행일은 다음과 같음

시행일	주요 개정사항	
18.11.1 부터	· 잦은 경영진 변경회사 등 직권 지정지정사유 확대	
	· 감사인 지정시기 단축	
	ㆍ 회계위반 등 관련 증선위 보고의무 신설	
	ㆍ 회계위반에 대한 과징금 신설 및 형사벌칙 강화	
	ㆍ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대표자 보고의무 강화,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예외	
	대상회사 신설 등	
18.11.1 이후	・ 외부감사인 선임 기한 단축(4개월->45일)	
개시 사업연도	ㆍ 3개 사업연도 동일 감사인 선임 대상 확대	
	ㆍ 감사인 선임권자 변경 등 선임절차 개정	
	· 감사인 선임관련 준수사항의 문서와 및 사후확인	
	· 감사인 후보평가 및 사후평기	
	ㆍ 감사품질관리 관련 예산비중, 품질중심의 성과평가체계 구축 여부 등의 사항	
	을 공시	
19.9.1 부터	· 감사인 지정방법 개청(규정 별표3 및 4)	
19.11.1 이후	· 외부감사대상 회사(유한회사, 비상장법인 외형요건 등)	
개시 사업연도	· 등록감사인만 상장법인 감사 가능	
	· 상장사, 소유경영 미분리 비상장회사에 대한 주기적지정제	
자산규모에	· 주권상장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를 감사로 상향 및 연결기준 확대	
따라 순차적용	· 구선항의 대한 네구와계한다세포 삼포를 삼시포 영양 및 현실기군 확대	